

#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

2024. 3.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의제

##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1-1.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 1-2.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 이관
- 1-3.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 1-4.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 1-5.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 2.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2-1.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시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제 도입
- 2-2. 교사의 본질업무, 교육지원업무와 구분 법제화
- 2-3. 별도 정원의 순환제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 2-4.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과밀학급 해소

## 3.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 3-1. 교육 훼손 없는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실시
- 3-2.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

##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확립

- 정서행동위기학생/느린학습자·ADHD학생/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필요 학생 지원법’

## 5.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5-1. 견고한 대입사건예고제를 통한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
- 5-2.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및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취업구조 마련
  - 학교교육만으로 상급학교 진학 가능한 입시제도 마련

## 6. 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 6-1. 교사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 6-2. 교사 임금(봉급/수당) 물가연동제 도입
- 6-3.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 7.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 7-1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직종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정치후원금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의원실·정당 고용휴직 허용
  -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 예비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7-2. 일반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교육활동 외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공직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 8-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8-2. 교육 훼손 없는 국가 책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 8-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확립

## 9.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 9-1.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및 지역 균형 설립
- 9-2.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

## 10.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 10-1. 정상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 10-2. 교사의 순직인정처리 제도 및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 10-3. 교원에게 타 직종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적용
- 10-4. 교사와 타직종 공무원간 차별 해소
  - 퇴직 준비 연수제, 자율연수휴직제, 연가저축제 차별 해소

#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1-1.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 □ 현황 및 문제점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 여건의 불비, 책임 회피를 위해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실제 시행이 어려워짐.
- 수업방해학생의 분리는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한다는 제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를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함.
- 분리제도를 책임 시행해야 할 교장 교감 등이 책임을 회피하고 보결교사나 교무실로 분리책임을 지정해놓고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조차 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넘기는 사태가 발생함.
  - 학생을 분리한 교사가 해당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며 악성 민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는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교사의 교육행위에 불만을 가질 확률이 높아짐.
- 외국에서는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사들은 과다한 조건과 절차, 보복성 아동학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없는 점, 외국처럼 교장이 실제 문제학생 부모를 상대하지 않는 관리자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교사들 대부분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를 활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 □ 정책 대안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 인력 지원 의무화

####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 분리로 인한 법적 쟁송 해소
- 시행령을 통한 분리제도 운영의 절차와 방법의 명료화
  - 수업방해 범위 명시(수업에 방해되는 행위: 소음, 언어, 폭력, 반항, 착석불응, 과제불응, 학습 미참여 등)
  - 수업분리 조건을 단순화 (동일 내용 한번 경고 이후 불응)
  - 분리 시 통보책임을 학교장이 대신 설명하고 통보할 책임을 명시화
  - 분리 시 학생 보호 장소를, 보호인력 상주하는 교실(없으면 교장실, 교무실은 복잡해 학생 반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로 명시
  -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에게는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의무 부여
  - 수업 분리에 불응해 계속 수업방해 시 교권침해로 간주

####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정부의 예산 인력 지원 의무화

- 별도 보호 인력 고용 시, 교육 경력자 채용 배치(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보호 인력은 분리될

정도의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지 못함)

## □ 기대 효과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실질적 학교 현장 정착
- 수업에 방해되는 행위가 줄어 수업의 질 향상
- 수업방해학생 행동을 조기 교정하여 교실붕괴 예방
-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나 학부모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감과 책무감 증대

## 1-2.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 이관

###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교육활동과 무관한 모든 갈등 사안이 학교폭력 사건화 되고 있음.
  - 사소한 학생 간 갈등 상황도 신고되면 학교폭력 사안화, 교육적 해결을 어렵게 함.
  - 민사,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10세-13세)의 모든 폭력 사안까지 학교가 대신 처리하는 상황임.
- 형사 고발보다 학폭 신고가 심리적인 장벽이 매우 낮아, 학부모들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사소한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남발하여 학교폭력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학교폭력 사건 증가라기보다 신고 증가 요인이 더 큼).
- 교사는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한 및 그에 따른 법적 보호장치가 없음에도 폭력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결과 처리를 하며, 정당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폭력 통보 및 조사, 결과 판단 과정에서 관련 가해·피해학생들이 도리어 학교나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늘어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음.
-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되었으나, 교사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함.

### □ 정책 대안 : 학폭법 개폐 - 학폭 범위 축소, 학폭 업무 교육청·경찰 이관

#### ○ 학교폭력예방법 개폐

- 학교폭력의 범위 명확화 : 생활지도로 해결 가능한 사소한 갈등 사안 학폭에서 제외
- 학교폭력의 신고처 : 교육청에 설치된 기구나 경찰로 변경
-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및 처리 : 교육청에 설치된 기구나 경찰이 담당
-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의 학생에 대한 사후 생활지도만 담당
  - ※ 교육청 학교폭력센터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경미한 사건을, 경찰청 아동폭력센터에서는 교육활동 밖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나 교육활동 중 일어난 심각한 폭력 사건을 담당하

## 게 하는 방안 검토

- 학교폭력예방법 개폐 이전의 학교폭력담당교사 보호 조치 강화
  - 학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면책되도록 시행령 등에 명시
  - 학부모와 갈등이 큰 통보, 조사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
  - 심리적 부담과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전담교사수당 신설 등의 조치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정상 운영 : 사안 조사와 보고 일체 교육청 관리

## □ 기대 효과

- 학교를 사법기관의 역할에서 해방되게 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함.
- 교사가 학부모와 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의 두려움 극복 가능.
- 학부모들이 경미한 사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
- 정말 필요한 사건에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어가게 되며 효율성 극대화

## 1-3.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계속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로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제17조),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이 금지 규정과 충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제10조제2항),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말하는 경우에도 교사를 보호해야 할 관리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오히려 소속 교사를 신고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 정책 대안 :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지원 확대

- 아동복지법 개정 :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를 특정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학생 생활지도활동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에서 해제

○ 교사의 아동학대 관련 소송 지원 확대

- 신고된 해당 교사의 전보 희망 시 즉시 전보 조치
-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청이 정당성 입증, 소송비용 부담
- 교육청 단체보험으로 민사소송 지원

#### □ 기대 효과

- 아동학대 고소의 두려움없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교권과 교실, 학교가 교육기능을 회복함.
- 관리자도 교사를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게 되며, 관리자, 교육청에 대한 교사의 불신을 종결하고 신뢰 회복

### 1-4.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을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2024학년도부터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닌 민원 대응팀에서 민원을 대응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었음에도 직종 간 갈등으로 민원대응팀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 정책 대안 :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 학교에서 민원 대응이 어려운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민원을 전담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함.
-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각 학교의 악성민원 실태를 점검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

#### □ 기대 효과

-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 운영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악성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직접 대응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는 환경 조성

## 1-5.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교육과정 법령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이 명확히 부여되고 있지 않음. 이는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사의 위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교사의 사기 저하를 유발함.
- 현재의 교육과정이 국가 중심 교육과정이라서 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 표준화되어 과잉 통제 및 부담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 과도한 대입경쟁으로 인해, 개별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어렵고, 교사의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자유롭지 못함. 대입에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생, 학부모의 민원 발생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법령으로 특정 성격의 교육을 강제하는 법률로 ‘범교과’ 영역(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등 10개 영역) 수업시수가 대체시간을 넘어서는 등 교육외적 강제가 심각함.
- 최근 지역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평가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 교사들의 평가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 정책 대안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법제화, 의무교육 부과 제한 법제화, 생활기록부 기재 자율성 확대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법제화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교사의 권한으로 명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권 개입 등 차단
-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 부과 제한 법제화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교사 자율성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 금지어 규제 현실화

### □ 기대 효과

-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에게 집중하는 분위기 형성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 및 현실화로 평가의 질 향상



## 2. 교사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2-1.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시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제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교사의 적정한 주당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교사 간 업무 갈등 유발, 교육력 저하.
- 교사들의 수업 외 학생 지도 시간이 수업 시수에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과도한 수업시수가 부여되는 교사의 사기와 교육활동력이 크게 저하됨.
- 교원 배치기준이 학급수 기준으로 되어 있어, 급별 수업시수 차별을 초래함.
-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수업시수가 과도하여(21~23시간, 연간 800~900시간) 수업준비에 어려움이 큼.
- 학급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가 고교학점제 관련 다과목 강좌 개설을 불가능하게 함.

#### □ 정책 대안 :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시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제 도입

##### ○ 교사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 교사의 주당 적정 수업시수기준을 법제화하여, 교사의 업무 적정화 기준 마련
- 유·초·중·고 별로 적정한 기준 마련(다학년, 다과목 수업 시 가중치 부여 등)

##### ○ 교과교사 정원 수업시수기준배치제 도입

- 학교, 교과교사 정원을 교과별 수업시수 기준으로 배치하는 교사배치기준제도 도입

#### □ 기대 효과

-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한 수업연구 시간 부족 문제 해결
- 급별, 교사 간 수업시수 차별 해소
- 학교 교원 정원 배치의 합리성 제고
- 고교학점제의 정상 운영 여건 조성

### 2-2. 교사의 본질업무, 교육지원업무와 구분 법제화

####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교육청 사업과 예산, 지자체 사업과 예산, 예술, 스포츠 강사사업 등 교사에게 수업 외의 업무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각종 위원회를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준비와 학생지도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함.

-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등의 여러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갈등이 발생함.
- 공무직은 채용 당시 명시된 업무가 있어 새롭게 발생한 업무를 서로 미루거나 결국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 □ 정책 대안 : 교사의 본질업무와 교육지원업무 구분 법제화

- 교사 본질 업무를 수업, 평가, 상담, 생활지도 및 그와 관련한 기록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 교사본질업무와 구별되는 교육지원업무는 지원인력의 업무로 법제화
  - 교사 업무 외 행정업무는 교육지원인력 업무로 학교 지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함.
  - 교육지원인력은 교육지원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임용,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함.
- 공문총량제 및 정책일몰제 도입으로 학교 업무 총량 대폭 감축

#### □ 기대 효과

-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지도할 시간이 확보되어 교권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
- 학교가 교육에 중심을 둔 공간으로 재탄생함.
- 교육활동 보조 인력 간의 업무 갈등이 줄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대폭 해소됨.

### 2-3. 별도 정원의 순환제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교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지원팀 소속교사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이를 적용받는 교사는 주로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으로 2시간~4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원받음.
- 2시간~4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원하는 시간강사는 하루 정도만 학교에 머무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음.
- 업무와 수업은 겹치는 영역이 없어, 업무에 집중하다보면 수업집중도가 떨어져 ‘수업시수 경감’을 받는 교사 역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음.
-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공무원 등의 인력이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설계 등의 교무학사는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음.

#### □ 정책 대안 : 별도 정원의 순환제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 교사본질업무를 설정하고 그 외의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의 업무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교무학사업무만 전담하는 별도 정원의 교사를 배치하여 이외의

교사는 수업 등 교사 고유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함.

- 교무학사전담교사는 2~4년 이후에는 수업교사로 순환 배치되도록 하여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료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함.

## □ 기대 효과

- 교사가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교권이 살아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짐.
- 업무전담교사도 수업준비의 부담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교전반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음

## 2-4.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과밀학급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밀집 지역에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학교가 많이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개별화 교육을 과밀학급에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과학고, 영재고 등 특목고 학생들은 소인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라 60여 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등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음.

### □ 정책 대안 : 과밀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감축(추후 15명 지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임
- 교육전문가들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학급당 학생수는 15명이라고 정의하며 학급당 학생수가 18명을 초과하게 되면 학습과 학생관리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함.
- 미래교육의 핵심 지향인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함이 필요함.

## □ 기대 효과

- 개별화 교육 여건 조성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
-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개별화 지도 확대 여건 형성
-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을 높일 수 있음
- 교원정원 확대로 교사별 학교 행정 업무 경감

### 3.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 3-1. 교육 훼손 없는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실시

#####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관련 대책과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책으로 어린이 청소년 돌봄(초등돌봄, 초중등 방과후활동)이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국가적 아젠더로 부상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돌봄 정부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 운영이 어렵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임.
- 지방정부에선 교육청(학교) 70%, 지방자치단체와 30% 정도 분산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돌봄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학교)으로 전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확대 기피
  - 교육청의 교육예산 전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교육청의 돌봄 확대에 한계
- 학교 초등 돌봄 운영의 구조적 문제 : 학교장 책임 운영 구조로 인해 학교 간 연계, 지자체 돌봄 시설과의 연계 불가
- 정부의 늘봄학교는 학교에 어린이 청소년 돌봄 과제를 떠넘기는 정책으로, 심각한 교육예산 낭비와 교육훼손, 학교 내 업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큼

##### □ 정책대안 : 교육 훼손 없는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실시

○ 돌봄 국가 예산 별도 수립 : 국가 예산으로 어린이·청소년 돌봄 국가 책임 운영

- 지자체의 돌봄 기피 문제해결
- 교육예산의 돌봄 전용 문제해결

○ 지방정부 돌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지자체 어린이·청소년 돌봄 통합운영

- 지자체에 돌봄센터 설치,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 교육청에 어린이·청소년 돌봄센터 설치, 학교 내 돌봄, 방과후활동 관장
- 지자체 돌봄센터가 교육청 돌봄센터와 협조,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 돌봄 통합운영

※ 교육정보다 지자체가 통합운영의 주체로 적합

- 학교는 학교장이 기관장으로의 한계로 기관 간 학교와 돌봄 시설 연계 불가
- 지자체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가능(이동 수단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 문화 체험활동 제공)
- 학교는 돌봄 시설 공간 제공, 돌봄 운영은 지자체

## □ 기대 효과

- 어린이·청소년 돌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 젊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문제해결에 기여
- 학교 내 교육과 돌봄 간,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
- 돌봄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 지자체의 아동복지 마인드 확대 발전
- 초등돌봄으로 인한 교육력 훼손 방지, 초등교육과 돌봄 상생 관계 형성

## 3-2.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출생의 급감으로 어린이집 폐업이 잇따르는 등 영유아 돌봄 체제가 붕괴되어가고 있음.
- 영유아 돌봄 문제의 해결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음.
- 어린이집 등의 요구로 유보통합이 급조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준비 없이 관할 부서만 교육부로 이관되어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자살이 급증하는 등 노인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되어가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2년 뒤 시행 예정이나, 성인 돌봄 지원에 치우쳐 있고,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 정책 대안 : 가칭 '국가돌봄법' 제정-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

#### ○ 가칭 '국가돌봄법' 제정

- 적용 대상 : 영유아 돌봄, 어린이·청소년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 국가 예산의 일정부분을 돌봄 예산으로 확보 의무화
- 지자체에 돌봄 통합 관리 의무 부여(교육 외 학교에서의 돌봄·방과후 활동도 통합관리)
- 국가돌봄청 신설

#### ○ 지역별 국가책임 어린이돌봄센터 설치

- 지역아동센터를 어린이돌봄센터로 전환 국가지원
-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 중 폐소되는 곳을 돌봄센터로 전환
- 학교 여유 공간에 지자체 관리 어린이돌봄센터 설치, 국가 지원

## □ 기대 효과

- 돌봄 문제를 국가-지자체가 책임 해결함으로써 돌봄 복지 국가로 성장
-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 동시 해결
- 돌봄과 교육 종사자 간 갈등 문제 근본 해결
- 돌봄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효과
- 지자체의 돌봄 복지 마인드 확대 발전

##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확립

정서행동위기학생/느린학습자·ADHD학생/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필요 학생 지원법’

### □ 현황 및 문제점

#### ○ 정서행동위기학생

- 우울, 조울, 불안, 조현병, 반항장애 등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은 현행 교육 제도 내에서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및 일반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개인 내적 및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어려움은 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통해 교육뿐 아니라 학생의 삶 전반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해결되어야 함.
- 그러나 보호자와의 관계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학교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유할 수 없으며, 권유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진단,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거나 예산이 적어 미비함.

#### ○ 느린학습자·ADHD학생

- 느린학습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실 안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집단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됨.
- ADHD 학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의집중 부족 등의 내현화 문제, 충동성 조절 어려움 등의 외현화 문제로 자신의 학습과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학교 규칙 준수 등에 어려움을 겪음.
-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은 정확한 명칭이 붙지 않아 현황 파악 및 관리조치 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 체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 ○ 다문화학생

- 의사소통 수단 부족 및 문화실조에 기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학부모에서부터 시작되는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집중적인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 정책대안 : 가칭 ‘특별지원 필요 학생 지원법’ 제정, 대상자 체계적 지원

#### ○ 가칭 ‘특별지원 필요 학생 지원법’ 제정

- 적용대상 : 정서행동위기학생, 느린학습자, ADHD학생, 다문화학생
- 주요 내용 :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정서행동위기학생 : 정서행동위기학생 판단 기준에 학교밖 권위 있는 기구에서 담당,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병원 연계 예산을 대폭 확대, 진단, 상담, 치료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

- 느린학습자 또는 ADHD : 판별할 수 있는 진단체계 마련, 느린학습자는 기초학력 미비학생에 준하여, ADHD 학습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준하여 지원 체계 고려
- 다문화학생 : 통번역 지원 확대(학부모 상담 등을 위한 통역 지원 및 학습자료, 교과서 등에 대한 번역 지원), 학생의 모어를 사용하는 보조 인력 제공을 통한 개별적 수업 지원

## □ 기대 효과

-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인한 학급 붕괴 또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 공교육의 신뢰성 향상
-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질적 발전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



## 5.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5-1. 견고한 대입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한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2020학년부터 대입 4년 예고제가 시행되어 교육당국은 중3 새학년 직전인 2월까지 대입전형 정책의 틀을 공개해야 함. 이는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리 자신이 치르게 될 대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들이 사전에 방향성을 갖추고 전형을 설계하도록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런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대교협의 승인을 받으면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입제도 변경이 종종 발생함.
  -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갑자기 도입된 '학종 블라인드제 도입'
  - 2023년 6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정책 발표(수능 불과 5개월(150일) 전 발표)
  -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 2028 대입개편안도 고교학점제와 상극인 정시 40% 기조 유지로 발표됨
- 대입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수록 불안이 커지고, 사교육시장이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음.

#### □ 정책 대안 : 견고한 대입사전예고제 운영

- 대입제도 사전예고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전형계획의 예외를 줄이고 대입 4년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함.

#### □ 기대 효과

-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
-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정상화

### 5-2.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및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취업구조 마련
- 학교교육만으로 상급학교 진학 가능한 입시제도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누구나 과도한 입시경쟁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입시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를 해소하는 입시제도 개혁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필수 요소임.
- 그러나 입시경쟁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소득과 사회·정치적 지위의 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및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취업구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
- 현행법은 모든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의 편견 요소를 채용 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 차별을 방지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 정부는 2022년 10월 28일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8대입개편안은 결국 수능 9등급을 유지한 채 내신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는 것으로, 수능의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 미래 교육 추진의 담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쟁교육 해소 방안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되었음.
- 경쟁교육 심화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와 과다 교육에 따른 교육력 낭비라는 사회적 문제가 전혀 해결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 정책 대안 :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 채용 법제화

### ○ 경쟁교육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 필요성 : 국가의 100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미래 문제가 달린 경쟁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함.
- 참여 주체 : 정부, 여야, 교육계, 경영계, 학부모, 학생 등

### ○ 2대 사회적 합의 의제

-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 해소 및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취업구조 마련
- 학교교육만으로 상급학교 진학 가능한 입시제도 마련

## □ 기대 효과

-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쟁교육을 줄여갈 수 있는 입시제도 마련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의 대안 마련 여건 조성
- 학력 차별 해소 사회적 분위기 형성

## 6. 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 6-1. 교사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노동조합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음.
  - 현재 교육공무원은 40만 명(2020.4. 교육부 통계)으로 국가공무원 68만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74만:40만)에 이르고 있음.
  - 교원의 봉급과 수당 등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교원(사립 교원 포함)의 처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현재 사립 교원도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게 되어있는 바, 사립교원 16만 5천 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56만 5천 명으로 교원 제외 공무원 74만 명의 76%에 달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총 130만 5천 명으로 이중 공무원은 56.7%, 교원은 43.3%를 차지함.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차관급 부서인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공무원보수위 참여 부처 공무원의 권한이 미약하여, 보수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결정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무시되기 일쑤임.

#### □ 실현방안 : 공무원보수위를 총리실 산하 법정 위원회로 법제화

-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으로 공신력이 보장된 법적 협의기구로 설치 운영
  -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섭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공무원 보수 등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총리실을 교섭 창구로 삼아야 함.
  - 교원·공무원의 보수 관련 협의기구는 정부의 다부처의 장이 관계 당사자인 만큼 일개 부처장의 권한에 귀속되는 기구 이상의 법적 기구로 설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교원노조 대표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정부 부처의 교원노조 배제 제어
  -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보수 관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에 대한 통합적 조율을 위해 필요하며, 실효성 없는 보수 관련 단체교섭 논의에 교섭역량 낭비 축소를 위해 필요함.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해 공무원 사용자인 관할 부처의 장이 정부의 예산 관련 업무 부처의 장과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함.

## □ 기대효과

- 교원·공무원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보수·수당에 관한 권한이 없어 교원·공무원의 임금교섭은 무력화되어 왔음. 또한, 공무원 보수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사실상 행정부를 대표할 수 없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원인이 큼.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법적 심의기구로 총리실에 설치될 경우, 공무원사회의 직능별 대표성을 포괄한 교원·공무원노조 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로 구성된 보수 의결에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6-2. 교사 임금(봉급/수당) 물가연동제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는 87.0%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등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6%로 조사됨. 교직 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열정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해 기준 물가상승률은 6.1%인데,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1.7%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매년 삭감되어 왔음. 임금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의 변동에 연동하는 정책이 시급함.
- 수당을 제외한 초임 교사의 본봉은 215만 2,400원이며, 직무에 따른 각종 수당 역시 적음.

### □ 정책 대안 :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법제화

-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공무원보수(수당 포함)를 최소한 전년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법제화

### □ 기대 효과

- 교원의 실질 임금 삭감을 막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
- 1인 가구 평균지출액에도 못 미치는 저경력 교사의 임금 현실화
- 교사들의 각종 수당 현실화 및 교사 공무원 생존권 보장

## 6-3.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 □ 현황 및 문제점

- 1960년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한국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네 차례나 재정안정화 개혁을 거쳐야 했음.

-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지적을 통한 정치적 해법으로 몰아세워 처리한 면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의 이점은 점차 축소되어, 낮은 보수와 함께 공직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재정 고갈 문제 등 보험 수리적 불균형만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제도 불신과 노후 불안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음.
- 2015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이행 노력 / 공무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상 미흡한 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 □ 정책 대안 :

- 2015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노인빈곤을 개선 및 국민연금 재정 확충, 공무원 인사정책기구를 구성하여 소득공백문제 해소)
- 장래효 원칙을 어긴 2015연금수급연령 개정사항 재개정(2015년 이전 발령자 60세 수급)을 통한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세대 간 차별 축소
-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의 노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연금배제 해제
- 공적연금간 실질 수급액 수렴 현상을 반영한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
- 부담 측면의 형평성을 배제한 수급액의 단순 비교 등 국민여론 호도 금지
- 보수 및 보수인상을 현실화 방안 마련하여 공무원연금액 역전 현상(타 공적연금과의 역전, 더 복무하면 역전) 방지

#### □ 기대 효과

- 공무원연금제도의 신뢰성 회복
- 공무원의 복지는 점차 축소된다는 현장의 인식 개선
-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공직 이탈 방지
-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및 공명정대한 공직 수행 권장

## 7.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 ■ 1단계 : 학생 대상 활동 타 직종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정치후원금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의원실·정당 고용휴직 허용
-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 ■ 2단계 : 일반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교육활동 외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공직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7-1. (1단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직종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중등교원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탈되고 있음.
  - 단순히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음.
  -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정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고, 유치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조차 교원 신분으로는 출마할 수 없음.
- 교수는 정치적 자유가 있는 대학생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가 전면 허용됨. 그러나 선거권이 있고(18세), 정당 가입권이 있는(16세) 고등학교 청소년을 교육하는 중등 교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전면 허용되나, 동일한 3-5세 어린이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유치원교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초중등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각종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전면 허용되고, 동 연령대의 아동 청소년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강사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전면 허용되는데,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 OECD 37개 가입 국가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정치 후진국 일본조차도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나 UN도 대한민국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2016년,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함.

### □ 정책 대안 : 학생 대상 활동 타 직종과의 차별 해소

○ 정치후원금 허용

- 정치적 자유를 가진 보육, 복지, 사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사에게만 지정 정치후원금조차 금지하는 것은 교육전문성에 입각한 교육 입법을 위한 교원 활동의 발목을 묶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적 의사 공표가 아니므로 교원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부여되어야 함.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학교교육 현장에 대한 체험 경력이 매우 중요한 직책인 바, 유초중등교육 경험자가 맡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교육감의 출마 자격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체험 경력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 경력 등이 있으면 허용되고 있음. 대학 교육 경력이 일정기간 있으면서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 누구나 출마 가능함. 그러나 유초중등 교사의 출마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학 교수는 휴직 출마를 허용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의 휴직출마는 불허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휴직 출마는 당장 허용되어야 함.

○ 의원실·정당 고용휴직 허용

- 의원실은 유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입법에 유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정당은 유초중등교육 관련 정강 정책을 마련하는 유초중등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의원실과 정당은 현직 유초중등 교사를 보좌관이나 전문인력으로 고용할 수 없어, 의원실과 정당의 교육 관련 정책안과 입법안이 주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의원실과 정당이 일부 유초중등교육 경험자를 고용하여 활용하기도 하나, 해당 인력이 제한적이고, 또 해당자의 경험이 상당 기간 이전의 경험으로 현재의 교육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교사는 산업체, 국가기관 등에 고용휴직이 허용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인 의원실에 고용휴직이 허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의원이 속한 정당에 고용휴직이 허용되지 못할 이유도 없음.
- 따라서 의원실과 정당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합리적인 입안과 교육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 관련 입법안 마련을 위해 교사가 의원실 및 정당에 고용휴직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사는 업무시간 외 개인적 SNS 활동과 같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됨.
- 현행법상 교육활동 중에 편향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종교적 편향을 표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교사가 학교 밖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교사에게는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금

지되어 있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

- 교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학생이 알았다고 하여 학생에게 어떤 종교적 편향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공인하고 있듯, 교사가 학교밖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여 일부 학생이 이를 알았다고 하여 그 학생에게 어떤 정치적 편향이 조성될 것이라는 추측은 검증된 바 없는 과도한 억측임.
-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아닌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음.

○ 예비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정당이 정당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예비 경선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참여는 국민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 따라서 교사가 정당의 예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음.

□ 기대효과

- 정당과 의원의 교육입법과 교육정책 수립에 교사의 교육전문성 반영 확대
-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교육현장 적합성 제고
-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제고

7-2. (2단계) 일반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 교육활동 외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7-1과 같음

□ 정책 대안 : 정당 가입 허용 / 공직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일반적인 민주국가처럼 교육활동 중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키되, 교육활동 외 학교 밖 정치활동 전면 허용

□ 기대효과

-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완전 해소
- 한국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 최소 OECD 국가 수준으로 향상



##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 8-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기본법」 제9조와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함. 그러나 유치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로서의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설 학원 등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 강아지유치원, 노인유치원 등의 명칭이 만들어지고 있음.
-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교육 기관의 명칭인 ‘유치원’이라는 말은 일제 잔재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 정책 대안 :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 만3~5세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학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유아교육법」 제2조2항 개정(“유치원”→“유아학교”)

#### □ 기대 효과

- 유아교육이 ‘학교교육’,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의 기반 마련
-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청산

### 8-2. 교육 훼손 없는 국가 책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 □ 현황 및 문제점

- 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보육재정으로 전용되어 유·초·중등 교육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큼.

#### □ 정책 대안 : 유보통합 예산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유아교육 완성

- 유보통합 예산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예산과 별도의 예산 마련  
(기존 보육예산 유지 및 이관,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
- 국·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 □ 기대 효과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공교육화로 유·초·중등교육 보통교육 국가책임교육제 완성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와 예산 투입 강화

### 8-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확립

#### □ 현황 및 문제점

-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저하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큼.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대상인 3~5세의 유아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되며,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음

#### □ 정책 대안 : 유아교육법 개정 3~5세 유아교육 공교육화 입법화

- 유아교육법 개정 3~5세 유아교육 공교육화 명시
  - 3~5세 유아교육기관을 유아교육기관(유아학교)로 명시
  - 유아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명시
  -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지원을 초·중등학교에 준하도록 명시
  - 유아교육 담당 교사의 자격 초·중등학교 교사에 준하도록 명시

#### □ 기대 효과

-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상향
-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국사회의 지속 불가능 우려 해소의 기반 형성

## 9. 국가 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 9-1.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및 지역 균형 설립

#### □ 현황 및 문제점

- 2021.07.30.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7,027명. 특수학교 187개교인데 이중 사립이 90개교, 국공립 특수학교는 97개교로 특수교육의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장애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지 못함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으며 늘 문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통학 차량을 타고 1시간 이상 통학해야 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은 현실이 뉴스로도 보도되고 있음.
-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 많아 특수학교 재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에 따라 장애 학생 가정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음
- 대규모(유,초,중,고, 전공과)특수학교의 형태로 학교 설립이 어렵고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및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함.
-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법에 의거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임. 그러나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까지 특수학교 부족으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함에 따라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내에서 통합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 특수학급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 전일제 특수학급(통합학급 교육 없이 특수학급에서 모든 일과를 보내는 경우) 등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 병설유치원과 같은 형태로 병설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의 부재로 추진 불가능.

#### □ 정책 대안 :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및 병설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대규모 특수학교보다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특수 중등학교, 특성화특수학교 등) 설립 추진
-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유·초·중·고 병설특수학교 설립
  -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병설특수학교 법적 근거 마련

#### □ 기대 효과

-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국가 책무성 확립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택권 보장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 향상

### 9-2.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통합학급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음
  - 제도가 미비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통합학급마다 차이가 발생하거나, 교사에게도 큰 부담이 됨.
  -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닌 보조 인력의 배치 유무 등 형태에 민감하게 됨.
  - 특수교육 보조 인력은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지요원 등 교육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갈등과 교육적 어려움을 빚고 있음.
- 학부모에게 모든 권리와 선택권이 집중되어 있음.
  - 학생에게 적합한 특수학급의 형태(특수학교, 특수학급 부분통합, 일반학급 완전통합)를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학생을 만나고 학교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나 온전히 학부모에게만 권리가 있음.
  - 직접 교육받는 것은 학생이지만 학생의 의사나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결정구조는 문제가 있음
-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없음
  - 학부모는 배치 형태부터 특수학급 수업 시수 등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권유하는 생활지도방법 연계 등 가정에서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음.
- 학교 관리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 또는 태도가 미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동등한 학생이 아니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정책 대안 : 교육공동체 책무성 회복 및 특수학급 교과전담교사 배치

- 교육 전문가의 권한 강화 및 교육 공동체 책무성 회복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권한 강화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관리자 책무성 명확화
  - 교내 교육활동 협조에 대한 학부모 책무성 명시
- 통합학급 협력수업 제도 마련 및 협력수업을 위한 특수학급 교과전담교사 배치
  - 현행 보조인력 제도와 병행하여 특수학급에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통합교육현장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도모
  - 특수학급 교과전담교사가 특수학급에서 일부 시수를 담당하는 동시에 통합학급에 협력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중한 특수학급 수업 시수를 정상화하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수업의 질 향상

## □ 기대 효과

-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적 통합 실현
- 통합교육 정상화를 통한 특수교육(개별화교육)의 정상화
-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비장애학생 교육의 질까지 향상되는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

## 10.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 10-1. 정상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 □ 현황 및 문제점

- 교섭창구단일화 도입 후, 유치중등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 상태임
  - 교육부 교섭 : 2022년 9월 요구한 단체교섭이, 조합원 1,000명 미만의 소수노조의 비협조로, 1년 6개월 지나서도 교섭위원 선임조차 못하고 있음.
  - 경기도 교섭 : 2021년 4월 요구한 단체교섭이,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교섭을 시작도 못하고 있음.
-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불응에 대한 제재 방법 없음(일반노조법은 불참시 참여노조가 절차 진행, 제14조의6 제2항, 제14조의8 제2항).
  - 소수노조에 의한 단체교섭 방해가 가능함.
- 노동부의 조합원 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움(일반노조법은 노조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14조의 7 제8항,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
- 교섭노조 간 의사결정 구조 없음(일반노조법은 대표교섭노조가 의사결정, 비례 구성 시도 다수 조합원 노조가 교섭위원 대표가 됨. 시행령 제14조의9 제6항).
  - 교섭위원을 구성에 합의해도 노-노간 이견 발생 시 해결 방법이 없음.
- 단체교섭 체결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음(일반노조법은 교섭 대표 노조 확정 후 1년까지 타결 못하면 타노조 교섭 요구 가능.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 교섭노동조합에 의한 교섭 무기한 지체로 신설 노조의 교섭권 제한
  -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신설 노조의 교섭권 장기간 제한

#### □ 정책 대안 :

- 정상적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일반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현행법)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를 준용한다.

#### □ 기대 효과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의 절차 등에 대해 일반노조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교섭노조에 의한 교섭의 무기한 지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막고, 정상적 단체교섭이 가능해짐.
-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노사 간 대립과 갈등 해결의 계기 마련

## 10-2. 교사의 순직인정처리 제도 및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교사들의 순직 인정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
  -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의 자살 교원 평균 비율은 27.6%
  - 자살 교원 중 공무상 사망 인정률은 1.9%에 지나지 않음
  - 이는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
- 교사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기 때문
  - 학교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유족에게 모두 맡겨짐.
  - 만일 학교가 유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순직 인정을 위한 각종 문서와 증거를 유족들이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구조

### □ 정책 대안 : 순직 신청 조력 시스템 구축, 공무상 재재 요건 완화

-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 유가족이 공무상 사망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바, 교육청에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함.
  - 교원 사망 사건 발생 시 시도교육청 소속 현장지원팀을 학교에 파견하여 사안 조사를 전담해야 함.
-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 완화
  - 공무상 재해 보상을 교권 침해 및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근거로 인정해야 함.
  -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의 참여 보장
  - 교육적 상황이 심의에 충분히 고려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 기대 효과

- 적절한 재해 보상을 통해 교사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교육 환경 및 사회적 인식

변화

- 교사들의 교권침해 및 피해 사항들에 대한 재해 보상 현실화
- 순직 인정 신청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들의 고충 해소

### 10-3. 교원에게 타 직종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적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그러나,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 정책 대안 : 교육공무원법 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 ○ 교육공무원법 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 성폭력,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신설함.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계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
- 피해공무원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 설치 규정 신설.
- 고충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

#### □ 기대 효과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이 가능해짐.

### 10-4. 교사와 타직종 공무원간 차별 해소

- 퇴직준비 연수제, 자율연수휴직제, 연가저축제 차별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직, 소방직, 군인 등 교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퇴직준비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
  - 국가직 공무원은 급수와 상관없이 6개월,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직은 6개월~1년, 경찰직 6개월의 퇴직준비연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모든 타 직종 공무원 모두에게 시행되는 퇴직준비연수제가 교원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이며,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지위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임.
- 교사는 자율연수휴직제와, 연가저축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 정책 대안 : 교사 퇴직준비연수제, 연가저축제 허용,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 ○ 교사 퇴직준비연수제 도입

- 현재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받고있는 퇴직준비연수제도를 교사에게도 적용함.
  - 2019년도 교육통계에 의하면 명예퇴직 교원수는 6,509명, 기타퇴직 교원수 2,979명, 정년퇴직 교원수 3,294명으로 정년퇴직자는 퇴직자의 25%에 불과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소진이 많이 되어 조기 퇴직한다는 것을 말해줌. 이는 정년까지 고생한 교원에게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퇴직준비연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큼.
  - 정년퇴임하는 교원수가 적다는 것은 퇴직준비연수제도를 도입해도 예산부담이 적음을 시사함.

### ○ 연가저축제 허용,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 현재 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하는 연가저축제를 교사에게도 허용하고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여야 함.

## □ 기대 효과

- 타 직종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교직사회의 불만 해소
-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교원의 사회 참여 확대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대
- 오랫동안 교육에 헌신한 교사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교사 사기 진작